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재난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재난 및 사고 유형별 재난관리주관기관을 전면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유원시설 및 야영장 관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문화체육관광 분야 양성평등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담당관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의 정원 8명(6급 2명, 7급 1명, 9급 3명, 연구사 2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어원의 정원 1명(연구관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의 정원 2명(6급 1명, 9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국악원의 정원 1명(8급 1명),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의 정원 1명(연구사 1명), 문화체육관

광부 소속기관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정원 1명(5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12. 11. ~ 1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 중 “국어·언어 및 특수언어(한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국어·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자, 특수언어”를 “문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자 및 특수언어”를 “문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어 및 특수언어”를 “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문자 및 특수언어”를 “문자”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한국어 및 특수언어”를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를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를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한국어 및 특수언어”를 “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연구직공무원”을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한다.

제14장(제73조)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741”을 “738”로 하고, 일반직 계 “734”를 “73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650”을 “647”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1,771”을 “1,757”로 하고, 일반직 계 “1,445”를 “1,431”로 하며,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4”를 “5”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직 “10”을 “9”로, 3급 또는 4급 이하 “1,406”을 “1,392”로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원 6명(5급 2명, 6급 2명, 7급 2명)과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의 정원 14명(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8급 1명, 9급 4명, 연구관 1명, 연구사 3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어문연구실) ① (생략)	제39조(어문연구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어문연구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u>국어·언어 및 특수언어(한 국수화언어 및 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u> 정책 관련 법·제 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1. <u>국어·언어(한국수화언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문자 (점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u> -----
2. 언어와 <u>문자, 특수언어</u> 에 관 한 조사·연구	2. ----- <u>문자</u> ----- -----
3. 언어와 <u>문자 및 특수언어</u> 의 정보화 및 표준화와 정보자원 구축·관리	3. ----- <u>문자</u> ----- ----- -----
4. <u>국어 및 특수언어</u> 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4. <u>국어, 한국수화언어(이하 “한 국수어”라 한다) 및 점자</u> --
5. 언어와 <u>문자 및 특수언어</u> 관 련 문헌과 자료의 관리	5. ----- <u>문자</u> ----- -----
6.·7. (생략)	6.·7. (현행과 같음)
8. <u>한국어 및 특수언어</u> 관련 교 육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8. <u>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u> -- ----- -----
9. <u>한국어 교육 및 특수언어</u> 교 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9. <u>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u> -- -----
10. <u>한국어 교원 및 특수언어</u> 교	10. <u>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u> -

원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11. <u>한국어 및 특수언어</u> 교육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9조(원장) ① 국악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u>연구직공무원</u>으로 보한다. ② (생략) <u>제14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u> 제73조(평가대상 조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 11. <u>한국어, 한국수어 및 점자</u> ----- ----- 제59조(원장) ① ----- ----- ----- <u>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u>-----.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u><삭 제></u>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정원표(제70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741</u>	<u>738</u>	-3
·	·	·	
·	·	·	
일반직 계	<u>734</u>	<u>731</u>	-3
·	·	·	
·	·	·	
3급 또는 4급 이하	<u>650</u>	<u>647</u>	-3
·	·	·	

[별표 2]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1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1,771</u>	<u>1,757</u>	-14
·	·	·	
·	·	·	
일반직 계	<u>1,445</u>	<u>1,431</u>	-14
·	·	·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 또는 연구직	<u>4</u>	<u>5</u>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연구 직	<u>10</u>	<u>9</u>	-1
3급 또는 4급 이하	<u>1,406</u>	<u>1,392</u>	-14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73